

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수정 안내

(2023.3.10., 한국보육진흥원)

안녕하세요? 2021년 8월 발간된 한국보육진흥원 「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」 수정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
■ 한국보육진흥원 발간물 링크

<https://www.kcpi.or.kr/kcpi/cyberpr/etcpublication/detail.do?colContentsSeq=63734>

■ 수정 내용

구분	수정 전	수정 후
'22.2.16. (p.4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약 보육교직원 모니터링 중 아동학대(의심) 행동을 목격하게 된다면, 원장은 <u>즉각적으로 보육교직원을 영유아와 분리시키고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.</u>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 및 보고해야 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약 보육교직원 모니터링 중 아동학대(의심) 행동을 목격하게 된다면, 원장은 <u>즉각적으로 보육교직원을 영유아와 분리시킨다.</u>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 및 보고해야 한다.
'22.2.16. (p.9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가용 자원이 있을 경우,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에게 휴가를 주거나 다른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들이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. -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학대임이 명백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, 어린이집에서는 즉시 해당 보육교직원이 사직하도록 하여야 한다. - 조사 결과가 유보적이라면,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이익, 보호자와 다른 보육교직원들의 상황, 향후 이런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보육교직원의 배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. - 만약 해당 보육교직원의 형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, 어린이집 원장은 당사자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가용 자원이 있을 경우,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에게 휴가를 주거나 다른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들이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.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학대임이 명백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, 어린이집에서는 즉시 해당 보육교직원이 사직하도록 하여야 한다. - 조사 결과가 유보적이라면,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이익, 보호자와 다른 보육교직원들의 상황, 향후 이런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보육교직원의 배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. - 만약 해당 보육교직원의 형의가 벗겨진다면, 어린이집 원장은 당사자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/div>
'21.10.25. (p.29)		
'23.3.10. (p.1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나, 기타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<u>준하는</u>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나, 기타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<u>아동학대에 준하는</u>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